

第153回 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
2005. 2. 22(火)



主要業務報告



財 務 局

報告順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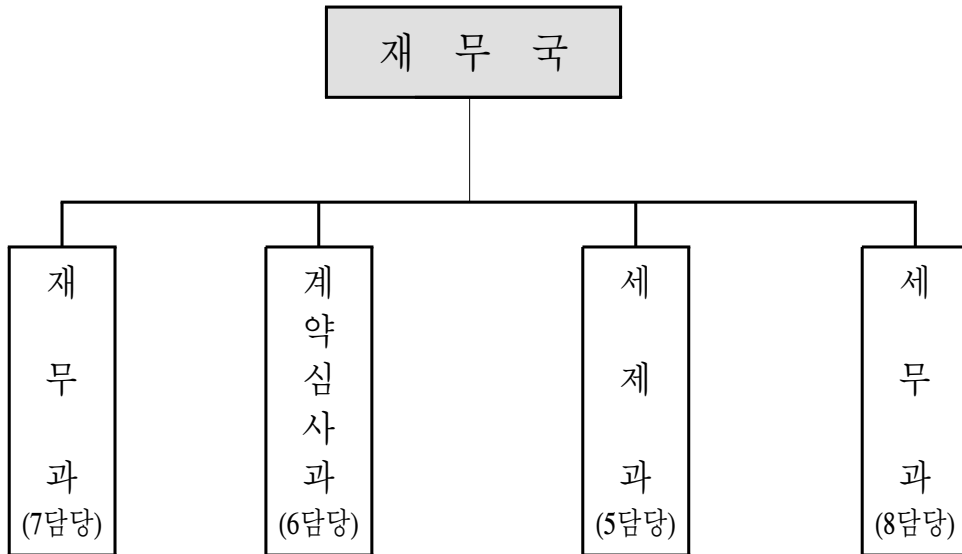
I. 一般現況

II. 2004年行政事務監查處理結果

III. 2005年主要業務計劃

I . 一 般 現 況

1. 기구 및 인력 - 4과 26담당(182명)



※ 2005.1.5 직제개편으로 18명 증 : 물품관리팀, 세무전산2팀 ('04.12-164명)

2.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 세입·세출 결산 및 자금관리 ○ 공유재산·물품관리 총괄, 재산의 취득·매각·교환 및 임대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발주전 심사·조정 ○ 원가분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세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관련 법령 등 정비·해석 ○ 지방세 과표조정,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세외수입 총괄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의 종합조정 및 총괄 ○ 지방세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및 체납시세 징수 관리

3.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4년	증 · 감	증감율(%)
총 계	343,493,891	390,548,542	△47,054,651	△12.0
일반예산	98,302,431	114,934,551	△16,632,120	△14.5
사업비	87,993,571	106,228,336	△18,234,765	△17.2
인건비 및 기본경비	10,308,860	8,706,215	1,602,645	18.4
인 건 비	8,673,194	7,178,714	1,494,480	20.8
기본경비	1,635,666	1,527,501	108,165	7.0
기타경비	245,191,460	275,613,991	△30,422,531	△11.0
재정보전금	49,460,000	49,618,000	△158,000	△0.3
징수교부금	195,731,460	225,995,991	△30,264,531	△13.4

II. 2004 行政事務監查 處理結果

2004年 行政事務監査 處理結果

□ 총 괄

- 처리요구사항 - 25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5	16	8	1	—
	시정요구사항	7	3	4	—	—
	건의사항	9	4	4	1	—
	자료제출	9	9	—	—	—

- 추진중 : 8건

- 과도한 결손처분 지양(세무과)
- 과년도 시세 체납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대책 강구(세무과)
-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대금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시세입 추계바람(재무과)
- 빈번한 조례개정 지양(재무과)
- 인터넷 납부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세무과)
- 38세금기동팀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파견보다는 시 자체 정원 확보 필요(세무과)
-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소관 재산에 대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바람(재무과)
- 사유지 은익재산을 철저 조사해서 발굴하기 바람(재무과)

- 검토중 : 1건

-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서초구 등) 조속히 이관해 주기 바람(재무과)

□ 2004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별 조치상황 : 별첨

III. 2005年 主要業務計劃

目 次

□ 歲入의 安定的 確保	
1.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8
2. 전자영수증제 생활화 정착 추진	10
3.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 홍보강화	11
4. 세외수입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12
□ 稅務行政의 合理化	
1.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 및 자치법규 정비	13
2. 온라인 지방세 포럼 운영	15
3. 개별주택가격조사·공시 업무 추진	16
□ 財務管理의 效率化	
1. 철저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성과 극대화	17
2. 청계천상권 물품 우선구매 지속 추진	18
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19
□ 生産的인 財産管理體系 確立	
1.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종합정보망 구축	20
2. 여미지식물원 낙찰자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21
3. 뚝섬 역세권 상업용지 매각 보류	22

歲入의 安定的 確保

1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과징활동 전개, 효율적인 체납징수, 세원발굴로 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 매분기별로 세입실적을 분석,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005 시세 예산규모 - 8조 6,818억원

- 2004예산(8조 4,986억원) 대비 1,832억원(2.2%↑) 증가
※ 전국지방세 33조 7,802억원의 25.7%, 국세 130조 6,132억원의 6.7%

세입여건

- 부동산거래의 감소, 경기호전 불투명 등 세수여건이 어려워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수분석 및 대책 필요

중점추진계획

세원확보 및 부과 철저

- 세원관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세원조사·발굴기능강화
 - 국세청 소득세 과세자료·기업결산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 세원 발굴 강화
- 경기변동요인과 세수변동요인 분석 철저
 - 한국은행, KDI 등 주요 경제 연구기관의 경기동향 분석자료와 연계, 분기별 세수전망 분석철저로 능동 대응

징수활동 강화

- 징수율 97%이상 달성 ('04.12월말 현재 95.3%)

- 납기내 징수독려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세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과징계획을 수립,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체납징수 강화
 - 체납관리 기초자료 일제정비 추진
 - 징수불가능 체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정리
 - 효과적인 체납정리를 위한 금융재산조회 등 시스템적 지원강화

□ 2005년 시세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예산(A)	점유비	2004년도 예산(B)	점유비	증 감(%)	
					금 액 (A-B)	비 율 (A/B)
총 계	8,681,783	100%	8,498,611	100%	183,172	2.2
취 득 세	1,349,295	15.5	1,328,328	15.6	20,967	1.6
등 록 세	1,852,718	21.3	2,104,414	24.8	-251,696	-12.0
주 민 세	1,978,607	22.8	1,766,328	20.8	212,279	12.0
자 동 차 세	436,716	5.0	428,857	5.0	7,859	1.8
농업소득세	3	0.01	3	0.01	0	0.0
도 축 세	3,550	0.1	2,853	0.1	697	24.4
레 저 세	200,752	2.3	306,140	3.6	-105,388	-34.4
담배소비세	596,807	6.9	497,628	5.9	99,179	19.9
주 행 세	459,600	5.3	397,016	4.7	62,584	15.8
도시계획세	460,900	5.3	319,138	3.8	141,762	44.4
공동시설세	126,707	1.5	110,389	1.3	16,318	14.8
지역개발세	626	0.1	605	0.02	21	3.5
지방교육세	1,100,994	12.7	1,063,605	12.5	37,389	3.5
과년도시세	114,508	1.3	173,307	2.0	-58,799	-33.9

2005.3.1부터 과세관청통보용 실물영수증 통보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본격적인 전자영수증제 시대 정착을 앞당기고자 함

※ 종이영수증 납부자도 서울전산수납센터(SEN)에 자동보관됨.

□ 개 요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행되는 모든 OCR 고지서(비OCR 고지서 제외)를 금융기관에서 수납과 동시에 전산데이터로 생성하여
- 서울전산수납센터(SEN)에 통보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 과세관청, 금융기관이 수납사실을 On-Line으로 공유하는 수납처리방식
 - ※ 금융기관의 세금 수납방법(현행)
 - 실시간 납부 : 무인수납방식으로 납부즉시 수납사항 전산확인 가능
 - 집중처리 납부 : 창구수납 방식으로 납부즉시 수납처리되지 아니하고 수합하여 집중 처리되기 때문에 수납처리후(수납일로부터 1일이후) 전산 확인 가능

□ 추진계획

-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은 자치구 세외수입시스템 연계추진 : 2월중
- 모든 수납금융기관 참여완료(현재 10개 기관 → 22개 기관) : 2월중
 - ※ 현재 참여 금융기관(10개) : 신한, 우리, 기업, 제일, 조흥, 국민, 산업, 하나은행, 우체국, 농협
- 실물영수필통지서 과세관청 통보폐지 : '05. 3. 1부터
 - ※ 처리지침 시달 및 실무교육 실시 : 2월중
- 세입관련 각종 통계자료(세목별 집계표 등) 종이문서 통보 폐지 : 4월중
- 등록세 영수증 첨부 없이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 9월중
 - ※ 종이영수증 납부자의 전자영수증 확인방법 : <http://etax.seoul.go.kr>의 "영수증 보관함"

지방세 고지서를 e-mail로 고지하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원 및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 전자고지·인터넷납부에 의한 납세자 편익증진

- 인터넷주소 : <http://etax.seoul.go.kr> (한글 : 서울시세금)
- 종이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
 - 우리시는 고지서 제작·송달 비용 절감 및 송달관련 민원 해소

2004년도 전자고지·납부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지방세 총 납부		인 터 넷 납 부		전 자 고 지	
건수	금액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
18,857	9,425,904	1,116 (5.9%)	859,388 (9.1%)	154(0.8%)	19,001(0.2%)

신청 및 납부방법

- 신청기간 : 연중 24시간 (납부는 은행영업시간)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재산세 등 구청에서 고지하는 지방세 전 세목
- 방 법 : 서울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
카드(LG,삼성) 납부

홍보강화 계획

- 공무원 등 유관기관 집중 홍보
 - 시·자치구·공사, 타 기관 공무원 적극 참여유도 (3월 중)
 - 대기업 등 인터넷 상시사용 회사원 참여홍보 (4월 중)
- 전 시민대상 홍보
 - 반상회, 지역신문, 지역방송, 전광판, 보도자료 등을 통한 집중 홍보

세외수입 세입기관별 월별 세입추계 및 부진항목 특별대책 강구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

세외수입 목표액(일반회계) : 10,201억원

- 경상적 세외수입 : 7,250억원(사업수입 4,748억원, 사용료 908억원 등)
- 임시적 세외수입 : 2,951억원(재산매각수입 2,024억원 등)

중점 추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건의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자금집행계획의 내실운영으로 공금예금 최소화
-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전개
 - 체납자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
-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
 - 원가이하의 사용료·수수료 지속적 현실화
 - 기타 새로운 신규 세입원 및 탈루세입원 적극 발굴

기타 추진사항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 '05. 4월중
 -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세외수입 실무담당자에 대한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 요령 등 별도의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절차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고

稅務行政의 合理化

1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 및 자치법규 정비

2005.1.5 개정 지방세법령의 공포로 달라진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 달라진 지방세 제도

[부동산 보유세]

○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지방세 이원화

- (종전) 자치구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 (변경) 1차로 자치구가 재산세 부과, 2차로 국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 (대상) 전국합산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토지 40억원 이상 소유자
- (징수) 재산세 부과세액은 공제, 국세 징수세액은 시·군·구 양여

○ 주택에 대한 통합평가 및 시가에 의한 통합 재산세 과세

- (종전) 건물은 면적기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별도 과세
 - (변경) 토지·건물을 합쳐 국세청기준시가(공동)·개별주택가격(단독)으로 과세
- ※ 과세표준 : 국세청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50% 적용

[부동산 거래세]

○ 취득·등록세 시가표준액 변경

- (종전) 주택과 일반건물 구분없이 건물 m²당 17.5만원 적용
- (변경) 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공동)·개별주택가격(단독), 일반건물은 m²당 46만원 적용, 토지(주택제외)는 종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적용

○ 등록세 세율인하

- (종전)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 3%
- (변경) 법인간 거래시 3%→2%, 개인간 거래시 3%→1.5% 인하

[자동차세]

○ 7~10인승 세율인상 및 50% 경감

- (종전)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 세율(연간 65천원)로 정액 과세
- (변경) 승용차 세율(cc당 140~220원)로 변경하되 3년간 33%씩 세율 인상
- ※ 세부담 완화를 위해 7~10인승 자동차세의 50%를 3년간 경감하도록 현재 「시세감면조례」 개정 추진중

[기타 세제]

○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 담배값 인상에 따라 현행 담배소비세율 510원(1갑당) → 641원으로 25.7% 인상

○ 과표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등 세율조정

- 도시계획세 : 0.2% ⇒ 0.15%
- 공동시설세 : 0.06%~0.16% ⇒ 0.05%~0.13%

□ 추진경과

- 지방세법령 개정내용과 설명자료 자치구 시달 : 1. 7
- 반상회보(1월)를 통한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홍보 : 1.13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홍보 : 1.18
- 지방세법개정 관련 구세조례정비안 자치구 시달 : 1.20
- 지방세법개정 관련 시세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1.20~2.9
- 「알기쉬운 지방세」 등 홍보물 제작·배포(구·유관부서) : 2. 3

□ 향후계획

- 시세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개정 : 3.15~3.29(제154회 임시회)
 - 조례상 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규정 정비 등
- 자치구 구세조례개정 추진 : 자치구의회 일정에 따라 추진

2

온라인 지방세 포럼 운영

지방세제 연구기능 활성화와 세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세연구소와 함께 온라인상의 지방세 포럼을 연중 운영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한 쌍방향 온라인 방식의 세제토론장 마련
- 세제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세제개선 발전방안 모색
- 시·자치구, 타 시·도·관계부처 및 각종 연구기관 관계자 참여
- 市 세무행정의 모니터링 기능과 세제개선 건의창구로 활용

□ 운영계획

- 운영방식 : 지방세연구소 홈페이지(www.tri.re.kr) 활용, 온라인상 토론
- 포럼개최 : 월 1회(년 12회, '05년 10회, 반기별 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 주제선정 : 지방소비세 도입 등 국세·지방세 조정, 세원확충방안 등
- 발제토론 : 발제자 1인과 지정토론자 3인으로 구성
- 포럼참여 : 전국 시·도 세무담당공무원, 세제전문가 등
- 지방세 지식센터 구축
 - 포럼을 통해 발제된 주제 및 토론문 등을 종합 정리하여 DB화
 - 지방세관련 논문 및 판례·심사결정례 정리 수록, 질문답변 코너 마련
- 소요예산 : 30백만원(관리인건비, 원고료, 콘텐츠입력비 등)

□ 추진일정

- 지방세포럼 전담연구원 위촉 : 1. 1
- 운영사이트 구축(지방세지식센터) : 2.15 (회원가입 개시)
- 지방세포럼 운영개시(온라인) : 3. 1
- 지방세포럼 1차 토론회(오프라인) : 7.20
- 지방세포럼 2차 토론회(오프라인) : 11.30

2005년부터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시가로 평가하는 주택공시 가격이 과표로 적용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함

□ 개 요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으로 '05. 4.30까지 가격 공시
 - 공동주택 : 국세청 또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
 - 단독주택 : 표준주택 - 건교부, 개별주택 - 자치구 결정·공시
 - ※ 자치구에서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개별주택가격 산정
- 조사대상 : 총 495,450호(단독주택 504,956호 중 표준주택 9,506호 제외)

□ 추진사항

- 주택가격 조사반 편성·운영(정규조직 확충시까지)
 - 시 1개반 6명, 자치구 25개반 715명
 - 인건비 등 소요예산 2,003백만원은 건교부에서 국비로 자치구에 지원
- 조사기구 및 인력 증원 추진
 - 기구 : 총 26팀(시 1팀, 자치구 25팀)
 - 인력 : 총 104명(시 5명, 자치구 99명), 전국 1,032명
- 주택가격조사 지원 및 지도·점검
 - '05.2월말까지 자치구별 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 및 점검

□ 추진일정

-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 : '04.12. 1 ~ '05. 2.28
-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05. 3. 2 ~ 3.26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05. 4.30
-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 : '05. 5. 1 ~ 6.30

財務管理의 效率化

1 철저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성과 극대화

계약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가시적인 예산절감성과를 거두고 있는 계약심사업무를 계속 발전시켜 서울시 전 기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함

□ 2004 계약심사 실적

(금액단위: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금액	평가금액	절감금액	조정률(%)
계	1,674	2,915,646	2,669,359	246,287	8.4
본 청	1,448	656,764	588,215	68,549	10.4
자 치 구	81	190,525	160,547	29,978	15.7
공 기 업	145	2,068,357	1,920,597	147,760	7.1

□ 2005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원가절감 경영마인드의 생활화 정착
- 발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심사업무 최대한 신속처리
- 발주부서와의 협력체제 강화로 효율적 원가분석 체제 구축

○ 심사대상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시본청·본부·사업소	5억원이상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 : 3억원이상)	2억원이상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 1억원이상)	7백만원이상
6개 지방공사·공단 및 자치구	10억원이상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 : 5억원이상)	5억원이상	심사제외

○ 심사중점

- 발주부서 기초 설계시 품셈, 실적공사비 등 적정적용 여부 심사
- 정확하고 신속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자재, 물품단가 등 조정

○ 기대효과

- 계약심사로 인한 발주예산 절감으로 경영마인드 확산 전파

그 동안 추진해 온 청계천상권 물품 우선구매 시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청계천복원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추진배경

-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한 주변상가의 매출감소에 대한 지원 필요
- 청계천복원공사에 대한 주변상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업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 지방공사, 자치구
- 추진기간 : 2005.1.1 ~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시 까지
(총 사업기간 : 2003. 8월 ~ 2005. 9월)
- 구매대상 : 청계천 상가에서 제조·판매하는 품목별 3,000만원 이하의 물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 구매방법 : 청계천 상가에서 시장조사하여 수의계약

2005 목표 : 10,000백만원

- 본 청 : 2,470백만원
- 지방공사 : 2,330백만원
- 자 치 구 : 5,200백만원

※ 2004 추진실적 : 176억원(목표 193억원 대비 91.5%)

시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바람직한 금고운영방안을 수립, 공개경쟁으로 시금고를 선정하여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시 수입증대 및 금고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시금고 운영근거 및 기능

○ 시금고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64조 내지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 시재무회계규칙 제93조 내지 제113조

○ 시금고의 기능

- 시세 등 세입금의 수납
- 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시금고 운영현황

○ 시금고 지정현황

금 고 명	회 계 명	평균잔액	선정방법
우리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8)	29,267억원	공개경쟁
국민은행	주택사업특별회계	2,150억원	수익(법정)

※ 1915. 3 ~ 2000. 4.30 : 우리은행, 수익계약(1~3년마다 약정 갱신)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거 국민은행을 시금고로 지정

○ 시금고 약정기간 : 2000. 5. 1 ~ 2005.12.31(5년 8월)

□ 추진일정

○ 공금운용전문가회의 개최 : 2005. 3월

※ 시금고 운영방법·선정방법·선정기준 등 자문

○ 선정계획 확정 및 공고·설명회 개최 : 2005.3월

○ 제안서 접수, 심사 및 선정 : 2005. 6월

○ 약 정 체 결 : 2005. 7월

生産的인 財産管理體系 確立

1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종합정보망 구축

토지, 세무 등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재산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함

□ 추진목표

- 시 보유재산에 대한 분석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
 - 토지, 지리정보, 세무 등 기 구축 정보시스템 활용 변동내역 분석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구축
 - 실측화된 자료를 축적, 공급체제 확보 및 신속한 재산조회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토지 7.5만건, 건물 1만건, 입목축 등 기타 713만건
- 추진기간 : 2004. 9 ~ 2005.12
- 추진내용
 - 행정자치부와 공동추진 협의 : 토지, 지리정보 등 국가표준 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안을 전국표준시스템으로 개발토록 협의
 - 행정자치부 : 시스템 개발 (2004. 9 ~ 2005. 5)
 - 서울시 : 시범기관 지정, 운영환경 및 자료구축 (2004.12 ~ 2005. 6)
- 토지분 실사자료구축
 - 업 무 량 : 24,546필지 57,885천㎡ (도로 및 사업중인재산 제외)
 - 기 간 : 2004.12 ~ 2005. 6
 - 소요예산 : 646백만원 (전문기관 용역비 등)
 - 사업내용 : 현장실사를 통한 토지의 특성·활용형태·공부 등 관련자료를 구축하고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시유재산의 수익적 활용계획을 제시

□ 향후일정

- 토지분 실태조사자료 및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 : 2005. 6.30
- 시스템 운영 및 문제점 보완 : 2005. 7. 1 ~ 12.31

여미지식물원 매각을 위한 국제일반경쟁입찰 실시결과 BK오일(주)가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매각재산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재산현황

- 토 지 : 3필지 118,069m² (35,716평)
- 건 물 : 15,046.14m² (연면적 17,397m²)
- 식 물 : 2,210종 483천여 개체
- 기 타 : 2,656점 (자동차, 기계기구, 공작물 등)

낙찰자 : BK오일주식회사 (대표 : 손영신)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665
- 주요업종 : 유류판매업

낙찰가격 : 55,275백만원

- 예정가 55,268백만원의 100.012%
- ※ 입찰자 - 유효 2명, 무효 1명

매매계약체결

- 계약체결 : 2005. 2.17(목)
- 주요조건
 - 고용인력(114명) 및 임대차 계약사항(사진관 1개소) 승계
 - 소유권이전시까지 수입은 서울시에 귀속 등

향후일정

- 잔금납부기한 : 2005. 4. 6 ~ 4.18
- 물품인계, 소유권이전 : 2005. 4월중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독점 역세권 상업용지 매각절차가 진행중에 경쟁이 과열되어 투기양상을 보임으로써 적정수준 이상의 지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매각을 보류하게 됨

□ 매각재산 개요

○ 재산현황 : 토지 3필지 16,752평(55,382㎡), 건물 3,615평(11,952㎡)

구역별	소재지	재산구분	면적(평)	예정가격(억원)	토지이용계획
계			16,752 (건물3,615)	3,771	
특별계획1구역	성수동1가 685-696	토지,건물	5,398 (건물3,615)	833 (평당 1,524만원)	용적률 400%, 높이 160m 미만
특별계획3구역	성수동1가 685-700	토지	5,597	1,503 (평당 2,686만원)	용적률 600%, 높이 250m 미만
특별계획4구역	성수동1가 685-701	토지	5,757	1,435 (평당 2,492만원)	용적률 600%, 높이 250m 미만

○ 매각방식 : 구역별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 입찰공고(1.21), 접수(1.31~2.3), 개찰(2.4) ※ 매각취소 공고(2.3)

□ 매각취소 사유

- 입찰업체간 경쟁과열로 지나친 고가낙찰(평당 4~5천만원, 예가 2,700만원) 및 아파트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최종 소비자 부담 전가 등 부작용 우려
- 서울시가 투기를 부추겨 모처럼 안정화된 전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큼

※ 매각절차 진행 중 취소에 대해 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낙찰자 결정전 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 향후계획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책에 부응하면서 바람직한 지역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개발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

[別 添]

2004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별 조치상황

총괄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5	16	8	1	-
	시정요구사항	7	3	4	-	
	건의 사항	9	4	4	1	
	기타(자료제출 등)	9	9	-	-	
재무과	소 계	14	9	4	1	-
	시정요구사항	5	3	2	-	-
	건의 사항	4	1	2	1	-
	기타(자료제출 등)	5	5	-	-	-
세제과	소 계	5	5	-	-	-
	시정요구사항	-	-	-	-	-
	건의 사항	3	3	-	-	-
	기타(자료제출 등)	2	2	-	-	-
세무과	소 계	6	2	4	-	-
	시정요구사항	2	-	2	-	-
	건의 사항	2	-	2	-	-
	기타(자료제출 등)	2	2	-	-	-

시 정 요 구 사 항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추진부서																				
<p>○ 과도한 결손처분 지양</p>	<p>○ 시세 결손 처분현황(2004.11월 현재) (단위 : 천건,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2002</th> <th colspan="2">2003</th> <th colspan="2">2004.11월</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결손액</td> <td>930</td> <td>2,670</td> <td>1,330</td> <td>3,377</td> <td>501</td> <td>1,110</td> </tr> </tbody> </table> <p>○ 결손처분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납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및 부동산·차량·금융 재산·직장조사 등을 통하여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징수 불가능한 채납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결손처분을 실시 함으로써, - 채납고지서 발송 등 채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징수가능한 채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채납관리 가능 ※ 결손처분한 채납세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유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결손처분 취소후 재산압류 및 징수독려 강화 <p>○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한 채납자 재산조사 활동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납발생 즉시 매월 재산조사 및 연 2회 이상 직장 조사, 금융재산 일체조사 등 유관기관과 입체적인 자료조사로 채납징수 강화 및 결손처분 최소화 <p>○ 결손처분된 채납세의 사후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를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38세금기동3팀) 징수활동을 강화 ※ 발굴된 새로운 전문징수기법 자치구 전파 	구 분	2002		2003		2004.11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결손액	930	2,670	1,330	3,377	501	1,110	<p>세 무 과 (추진중)</p>
구 분	2002		2003		2004.11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결손액	930	2,670	1,330	3,377	501	1,110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추진부서																				
<p>○ 과년도 시세 체납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대책 강구</p>	<p>○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현황(2004.11월 현재) (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data-bbox="483 427 1307 618"> <thead> <tr> <th>구 분</th> <th>2001</th> <th>2002</th> <th>2003</th> <th>'04.11월</th> </tr> </thead> <tbody> <tr> <td>조정체납액</td> <td>11,273</td> <td>10,542</td> <td>9,557</td> <td>8,122</td> </tr> <tr> <td>징수액</td> <td>1,347</td> <td>1,438</td> <td>1,347</td> <td>1,207</td> </tr> <tr> <td>징수율</td> <td>12.0%</td> <td>13.6%</td> <td>14.1%</td> <td>14.9%</td> </tr> </tbody> </table> <p>※ 조정체납액 = 전년도 이월체납액 + 증가상금 - 부과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년도체납 징수실적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매년 시세 총 체납규모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체납징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p>○ 향후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부동산·금융재산·직장조사 실시로 조기에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 조치하는 한편,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및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조치 병행 -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전문조직인 38세금기동팀을 적극 활용,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전개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 - 또한, 자치구의 체납징수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 체납징수에 대한 자치구의 선의경쟁유도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구 분	2001	2002	2003	'04.11월	조정체납액	11,273	10,542	9,557	8,122	징수액	1,347	1,438	1,347	1,207	징수율	12.0%	13.6%	14.1%	14.9%	<p>세 무 과 (추진중)</p>
구 분	2001	2002	2003	'04.11월																		
조정체납액	11,273	10,542	9,557	8,122																		
징수액	1,347	1,438	1,347	1,207																		
징수율	12.0%	13.6%	14.1%	14.9%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추진부서
<p>○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대금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시세입 추계바람</p>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시세입 추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미리 예측이 곤란하여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음. · 2001년 : 지역난방공사 매각 대금 (34,628백만원) · 2002년 : 창일고 학교부지 매각대금 (14,000백만원) · 2003년 : 마장동 테니스부지 매각대금 (34,273백만원) · 2004년 :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조합부지매각대금(32,535백만원), 중구 황학동 주택재개발조합부지 매각대금(2,788백만원) <p>□ 향후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유재산 매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p>재무과 (추진중)</p>
<p>○ 빈번한 조례개정 지양</p>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횟수 : 2회 <1차> - 시의원 발의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였거나, 하는 경우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2004.6.21 공포, 의원발의) <2차> -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매각대금 지원확대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명칭 및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2004.9.24 공포)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수립 횟수 : 4회 - 취득 : 18건(토지 8건, 건물 10건) - 처분 : 13건(토지 9건, 건물 4건) <p>□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전에 조례개정 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조례개정 및 관리계획 수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p>재무과 (추진중)</p>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추진부서																												
○ 당초 사업예산 중 과다한 집행사유 미발생 시정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운영의 경우 예산현액 167억원대비 141억원을 집행하고 2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중 1.17억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재산관리의 경우 예산현액 273.6억원대비 270.1억원을 집행하고 3.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중 3억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해당함 ○ 향후 연중 집행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재무과 (완료)																												
○ 다수계약 불이행의 이유와 대책 강구	<p>□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491 768 1294 969"> <thead> <tr> <th>년도별</th> <th>계</th> <th>계약 불이행</th> <th>계약 체결</th> <th>허위서류 제출</th> <th>적격심사 서류미제출</th> <th>부정당업자 입찰 및 계약</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39</td> <td>21</td> <td>9</td> <td>2</td> <td>5</td> <td>2</td> </tr> <tr> <td>2003년도</td> <td>27</td> <td>16</td> <td>3</td> <td>1</td> <td>5</td> <td>2</td> </tr> <tr> <td>2004.10</td> <td>12</td> <td>5</td> <td>6</td> <td>1</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불이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부터 2004년10월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한 총 39건 중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처분은 21건이며 - 계약 불이행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임 -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보증보험가입과 계약상대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공사 및 납품 등 계약 불이행시 보증인으로 하여금 시공 또는 납품토록 하여 계약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 또한 계약 불이행자에게는 법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있음 □ 향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체결시 보증인 설정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계약 불이행자에게는 강력한 제재처분을 통하여 성실한 이행을 확보토록 하겠음. 	년도별	계	계약 불이행	계약 체결	허위서류 제출	적격심사 서류미제출	부정당업자 입찰 및 계약	계	39	21	9	2	5	2	2003년도	27	16	3	1	5	2	2004.10	12	5	6	1	-	-	재무과 (완료)
년도별	계	계약 불이행	계약 체결	허위서류 제출	적격심사 서류미제출	부정당업자 입찰 및 계약																								
계	39	21	9	2	5	2																								
2003년도	27	16	3	1	5	2																								
2004.10	12	5	6	1	-	-																								
○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회의는 의회 정기회 시기를 참작하여 개최 요망	○ 우리국 개최 각종 위원회 회의는 시의회 회기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으며, 향후 상정 안건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음	재무과 (완료)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처리부서
<p>○ 체비지를 서초구에 빨리 이관해 주기 바람(자치구 이관 대상 재산 조속히 이관 촉구)</p>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관 및 양여 요구재산 : 총 458필지 668천㎡ - 조정기준에 의한 이관요청 : 437필지 590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관처리 : 286필지 324천㎡(2004.12.24 현재) · 이관 비대상 및 자료보완요청 : 151필지 266㎡ ※ 자료보완요청 : 시설완료 공원내 부지(23필지 41천㎡) - 서초구 청사부지 : 1필지 17천㎡ - 체 비 지 : 20필지 61천㎡ ※ 15필지 58천㎡는 차량임시보관소 부지 등으로 양여 비대상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 청사부지(1필지 17천㎡)는 양재시민의 숲 환원 후 양여를 검토 ○ 체비지중 동사무소 점유 부지(5필지 3천㎡)는 양여가능하나 양재시민의 숲 환원 후 양여를 검토 	재무과 (검토중)
<p>○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이 남발 않도록 간부회의시 건의바람</p>	<p>□ 건의사항 통보 : 재무 - 22983('04.12.3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국(행정과)에 건의사항 조치토록 통보 <p>□ 행정국 조치결과 : 행정과-228(05.1.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시와 자치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의 추진 성과도를 측정하고 그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시책은 제외하고 특수 시책 위주로 선정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주요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음. 	재무과 (완료)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추진부서																																																																																						
<p>○ 인터넷 납부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p>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납부실적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징수대비 5.6%에 그치고 있으며 ○ 특히, 특별징수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이용자들의 미숙지, 홍보부족 등으로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인터넷납부현황(2004.1.1~2004.10.31) (단위 : 천건, 백만원) <table border="1" data-bbox="491 645 1295 1037"> <thead> <tr> <th rowspan="2">세 목</th> <th rowspan="2">부과건수</th> <th colspan="2">징수</th> <th colspan="2">인터넷납부</th> <th colspan="2">납부율(%)</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세액</th> <th>건수</th> <th>세액</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1,422</td> <td>16,320</td> <td>8,210,383</td> <td>910</td> <td>681,569</td> <td>5.57</td> <td>8.30</td> </tr> <tr> <td>취득세</td> <td>837</td> <td>752</td> <td>1,204,916</td> <td>29</td> <td>109,423</td> <td>3.84</td> <td>9.08</td> </tr> <tr> <td>등록세</td> <td>2,153</td> <td>2,144</td> <td>1,875,766</td> <td>25</td> <td>42,631</td> <td>1.17</td> <td>2.27</td> </tr> <tr> <td>자동차세</td> <td>4,358</td> <td>2,899</td> <td>349,995</td> <td>254</td> <td>35,396</td> <td>8.77</td> <td>10.11</td> </tr> <tr> <td>주민세</td> <td>7,335</td> <td>5,042</td> <td>1,733,889</td> <td>238</td> <td>122,905</td> <td>4.72</td> <td>7.09</td> </tr> <tr> <td>재산세</td> <td>2,772</td> <td>2,504</td> <td>628,609</td> <td>175</td> <td>56,850</td> <td>7.01</td> <td>9.04</td> </tr> <tr> <td>종합토지세</td> <td>2,599</td> <td>2,085</td> <td>947,391</td> <td>167</td> <td>155,950</td> <td>8.00</td> <td>16.46</td> </tr> <tr> <td>사업소세</td> <td>88</td> <td>82</td> <td>141,662</td> <td>3</td> <td>6,225</td> <td>4.04</td> <td>4.39</td> </tr> <tr> <td>기타</td> <td>1,280</td> <td>812</td> <td>1,328,156</td> <td>18</td> <td>152,190</td> <td>2.20</td> <td>11.46</td> </tr> </tbody> </table> <p>□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자치구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운영 - 고지서 뒷면에 인터넷납부 안내문 표기 직접 안내 ○ 홍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소개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및 신고납부 방법 안내 - 납부된 세금 확인 및 영수증 출력방법 안내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시행, 인터넷납부의 편리함을 널리 홍보하여 인터넷 납부실적 및 징수율 제고 ○ 홍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대상 별로 전략 수립 홍보 -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납세자 만족 증대 - 시민들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납부 안내문 제작 부착 - 시스템에 연계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유도 - 시·자치구 직원의 홍보 요원화 - 주요 납세자인 주부 및 중·장년층 대상 적극 홍보 	세 목	부과건수	징수		인터넷납부		납부율(%)		건수	금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1,422	16,320	8,210,383	910	681,569	5.57	8.30	취득세	837	752	1,204,916	29	109,423	3.84	9.08	등록세	2,153	2,144	1,875,766	25	42,631	1.17	2.27	자동차세	4,358	2,899	349,995	254	35,396	8.77	10.11	주민세	7,335	5,042	1,733,889	238	122,905	4.72	7.09	재산세	2,772	2,504	628,609	175	56,850	7.01	9.04	종합토지세	2,599	2,085	947,391	167	155,950	8.00	16.46	사업소세	88	82	141,662	3	6,225	4.04	4.39	기타	1,280	812	1,328,156	18	152,190	2.20	11.46	<p>세무과 (추진중)</p>
세 목	부과건수			징수		인터넷납부		납부율(%)																																																																																
		건수	금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1,422	16,320	8,210,383	910	681,569	5.57	8.30																																																																																	
취득세	837	752	1,204,916	29	109,423	3.84	9.08																																																																																	
등록세	2,153	2,144	1,875,766	25	42,631	1.17	2.27																																																																																	
자동차세	4,358	2,899	349,995	254	35,396	8.77	10.11																																																																																	
주민세	7,335	5,042	1,733,889	238	122,905	4.72	7.09																																																																																	
재산세	2,772	2,504	628,609	175	56,850	7.01	9.04																																																																																	
종합토지세	2,599	2,085	947,391	167	155,950	8.00	16.46																																																																																	
사업소세	88	82	141,662	3	6,225	4.04	4.39																																																																																	
기타	1,280	812	1,328,156	18	152,190	2.20	11.46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추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조직인 세외수입 확충 실무기획단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세외수입확충기획단 토의를 거쳐 자치구간 인센티브제 시행, 전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실시, 유공자 표창 등을 추진하였으며,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분야 업무개선을 통한 세입 확충사업을 전개할 계획임. ○ 또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체 연구모임을 결성·운영하고 있음. 	세 제 과 (완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세금기동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파견 보다는 시 자체 정원 확보 필요 	<p>□ 38세금기동팀 조직현황 : 3개팀 4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별 현황 : 시 소속 21명, 구 소속 21명 ○ 소속별 세부내역 (단위 : 명) <table border="1" data-bbox="483 958 1300 1176">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합 계</th> <th colspan="3">행정·세무·전산직</th> <th rowspan="2">기능직</th> <th colspan="2">계 약 직</th> </tr> <tr> <th>5급</th> <th>6급</th> <th>7급 이하</th> <th>전임</th> <th>비전임</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42</td> <td>3</td> <td>3</td> <td>26</td> <td>2</td> <td>3</td> <td>5</td> </tr> <tr> <td>시 소속</td> <td>21</td> <td>3</td> <td>3</td> <td>5</td> <td>2</td> <td>3</td> <td>5</td> </tr> <tr> <td>구 소속</td> <td>21</td> <td>0</td> <td>0</td> <td>21</td> <td>0</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p>□ 시 자체 정원확보 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세금기동팀 조직검토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1. 7. 시장지시사항 제79호 ○ 38세금기동팀 정원확보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1.12. 재무국장방침(세무13410-1142) ○ 서울시 민선3기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38세금기동팀 증원요청 ○ 시 자체정원 13명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3410호 개정·시행('04.10.11) - 세무6급 6명, 세무7급 7명 증원 <p>□ 향후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자체 확보정원에 따른 인력충원 	구 분	합 계	행정·세무·전산직			기능직	계 약 직		5급	6급	7급 이하	전임	비전임	합 계	42	3	3	26	2	3	5	시 소속	21	3	3	5	2	3	5	구 소속	21	0	0	21	0	0	0	세 무 과 (추진중)
구 분	합 계			행정·세무·전산직				기능직	계 약 직																														
		5급	6급	7급 이하	전임	비전임																																	
합 계	42	3	3	26	2	3	5																																
시 소속	21	3	3	5	2	3	5																																
구 소속	21	0	0	21	0	0	0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추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재산세 인하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포기는 세무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소급인하는 법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자치구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 대법원 제소여부에 대해 지방세연구소·법조계 등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결과 재산세 소급인하는 납세자에게 이로운 변경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 성남시는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환급을 진행 중이며, 구리시는 경기도가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인근 주민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 재산세는 자치구의 고유재원이자 구청장에게 과세권이 있어 구청장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市가 재의를 요구하였음에도 재의결까지 한 자치구의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칙에 보다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 '04.10.15 市 정책회의를 통하여 대법원 제소여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고, 市에서는 구청장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임. 	세 제 과 (완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부동산세 신설 관련 市의 적극적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보유세 개편방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국회의원·시의원 및 자치구, 언론사 등에 자료 송부('04.11.29) ○ 지방세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 재경위 위원장, 여야 간사 및 위원 방문 우리시 의견 설명('04.11~12월) ○ 기자설명회 개최 우리시 의견 발표('04.11.29, 12.9)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 토론회 참석 반대의견 개선('04.12.10) ○ 보유세 개편시 서울시 공동주택 세부담 증감분석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관련 설명자료 작성, 국회 행자·재경위 전 위원 및 전문위원회에 배포('04.12.20) ○ 국회 재경위 공청회 및 행자위 간담회 참석 반대의견 개선('04.12.8, 12.27) ○ 향후 국회 입법동향을 계속 파악하면서 우리시 의견을 제시하여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국회방문 심의동향 파악·설명 등 적극 노력('04.12월) ※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국회의장 직권상정 본회의 의결('05.1.1) 	세 제 과 (완 료)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추진부서
<p>○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소관 재산에 대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바람</p>	<p>□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서울시 재산에 대하여 소재지, 면적, 관리부서 등 기초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면 현장 사진, 위치도 등 재산내역이 전산에 상세히 수록되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임 <p>< 공유재산종합전산망 구축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04.12 ~ 2005.12 ○ 대상토지 : 24,564필지(도로 및 재개발 등 사업중인 재산 제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기초자료 정비 및 구축 - 공유재산정보 운영시스템 및 인트라넷 구축 - 공유재산의 변동사항 파악을 위하여 지리정보, 토지정보, 건축정보, 세외수입, 행정자치부LAIB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p>재무과 (추진중)</p>
<p>○ 사유지 은익재산을 철저 조사해서 발굴하기 바람</p>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에 2건의 은익재산을 발굴하여 소송 등을 거쳐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에 의거 '73.11.19.우리시와 총무처간 상호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사유지의 소유권은 국가로 이전되었으나 국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6,571.6평을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 지방재정법 및 미군정 법령에 의거 법률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시 서울시로 승계 되어야 할 경기도 재산이 미승계 되어 경기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3,077평을 우리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04년도에는 1962년 공포된 구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울시에 편입되어야 할 264억원 상당의 토지(72필지 41,705평)를 경기도에서 매각하여 부당이득금을 취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일부토지에 대하여 표본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1.4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확대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음 ○ 향후에도 철저히 조사하여 은익재산이 있을 경우 우리시로 소유권이전 조치토록 적극 조치하겠음 	<p>재무과 (추진중)</p>

자 료 제 출

자료제출 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처리부서
○ 시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중 테니스장(한남동 소재) 사용료 산정 근거 제출	○ 감사현장에서 자료 제출하였음	재 무 과 (완료)
○ 2004년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사본 제출	○ 감사현장에서 자료 제출하였음	재 무 과 (완료)
○ 여미지식물원 감정평가서 사본 제출	○ 감사현장에서 자료 제출하였음	재 무 과 (완료)
○ 2003년도 세외수입현황 제출	○ 감사현장에서 자료 제출하였음	세 제 과 (완료)
○ 2003 재무국 세출예산 집행내역중 세무과 불용액이 많은데, 불용액 상세내역 제출	○ 감사현장에서 자료 제출하였음	세 무 과 (완료)
○ 시유재산 현황 제출(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 집계표 등)	○ 감사현장에서 자료 제출하였음	재 무 과 (완료)
○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울시 추진사항 일체 문건	○ 2004.12.1 문건 목록 및 사본 제출(김기성 위원) ① 기자설명회 개최 및 국회 등 제공 자료('04.11.29) ② 종합부동산세 신설관련 개선 건의문('04.9.22) ③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관련 검토의견 공문('04.2.10) ④ 종합부동산세 신설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문('04.1.6) ⑤ 종합부동산세 신설관련 건의문 (시도지사협의회, '03.11.20) ⑥ 종합부동산세 신설관련 개선 건의문('03.11.13)	세 제 과 (완료)
○ 전자영수증출력물 제출	○ 감사현장에서 자료 제출하였음	세 무 과 (완료)
○ 공유재산현황 제출	○ 감사현장에서 자료 제출하였음	재 무 과 (완료)